

□ 적용 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 이후 매립하는 폐기물부터 적용하며,
 - 자치단체 조례로 부과 지역,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,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등 규정 필요

I 지방세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제5항제3호,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,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(중 략) 시행한다.

제17조(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적용례) 제142조제2항제2호라목, 제143조제2호라목, 제144조제2호라목, 제146조제2항제4호 및 제147조제7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I 지방재정법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조정교부금에 관한 적용례) 제29조제1항 · 제3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 ·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.

【참고】 대법원 2011. 9. 2. 선고 2008두17363 판결

구 지방세법(2005. 12. 31.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어 2006. 1. 1.부터 시행된 것) 제258조 제1항에는 “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”고 규정되어 있었으므로,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그 부과 요건의 하나인 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비로소 부과지역이 대외적으로 확정되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.